2013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13년 12월 26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임 승 태 위 원

박 원 식 위 원(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해방 위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강 준 오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53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및 당행 신용정책 기능 재정립 등에 맞추어 동 제도의 명칭, 체계, 한도설정방식 등을 변경하기 위해「한 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간 행내 총액한도대출 태스크포스(task force) 및 신용정책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신용정책기능 재정립,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및 기본운영방향 등을 논의해 왔으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명칭, 체계, 한도 설정방식의 변경·개선 외에 제도의 기본운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기본운영방향을 정리하여 보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총액한도대출을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원대상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하며, 총 한도는 기존 프로그램이 당초 지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별 프로그램은 성격 및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보완하면서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들과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신용리스크가 높아서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출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 등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위원들은 이와 같은 제도의 기본운영방향 하에 동 제도가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한도설정방식도 현재 분기별에서 필요할 때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상정된 규정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금통위가 이미 의결한 바 있는 2013년 4/4분기 중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금통위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정된 개정안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안이 시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시장친화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나 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총액한도대출 외에 한국은행법상 활용 가능한 신용정책 수단들에 대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의 대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중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과 관련된 대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한국은행은 한은법 64조에 의거하여 총액한도 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 및 자금조정대출제도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과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법인에 대한 대출은 각각 한은 법 65조와 80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동 규정 개정안에서 명시적인 대출기간을 삭제한 것은 대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원래의 대출기간 설정 취지와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존에 총액한도대출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분기별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금 번 규정 개정으로 한도 설정 주기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기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규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한은법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출은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된 제도를 운용하면서 제도에 경쟁적인 요소 를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제도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용 실적에 대한 리뷰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대출제도의 운용방향을 변경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이 과거에 비해 골격을 잡힐 것으로 기대 하며, 금번 제도 개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분석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불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54호 -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1차적으로 주관위원의 의견을 반영·수정한 보고서를 위원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동 위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내년부터는 익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관한 금통위 논의를 11월로 앞당김으로써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당해연도 통화신용정책의 실제 운영상황도 평가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내년부터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논의시 물가 전망관련 분석자료도 보고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의 소비자물가 전망 부분에서 하방 리스크도 함께 기술함으로써 일방향적인 서술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내수부문 활성화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과 극대화'라는 문구를 양적개념이 포함되는 다른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안을 일부 수정 하였다고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생략)

<의안 제55호 -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등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3항,「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P-CBO 발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시장안정 P-CBO 운영 이후 잔여 보증재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 대출시 부대조건을 부과해서, 첫째로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시장안정 P-CBO 운용상황을 주기적으로 당행에 보고토록 하고, 둘째로 잔여 보증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타 용도 활용 등과 관련해서 당행과 반드시 협의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방안'의 시장안정 효과가 어느 정 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그 자체로 시장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주 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여신거래 특별약정 체결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로 인해 기업이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금번 지원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정 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정부와의 업무추진시 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P-CBO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주기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고주기는 과거 사례를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보고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고주기를 정해서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신용 보증기금에 명시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P-CBO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고주기를 분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등 실시(안)(생략)